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정 일자	1997-11-01
MSDS - 3050157		개정 일자	2013-06-12
Page 1 / 4		개정 횟수	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 품 명	수성바인다 200	색상	
일반적인특성	건축용/콘크리트용/처리제/전처리제/수성바인다 200		
제품의 용도	각종 시멘트기재 신축물의 풍화 초킹방지용 전처리도료		
공급자/유통자정보	삼화페인트공업(주) 및 대리점		
제조사 정보	삼화페인트공업(주)	전화번호	(031) 499 - 0394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성곡동)	작성부서	건축도료팀 / 박정영

2.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 ①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요소

- ① 그림문자 : 해당없음
- ② 신호어 : 없음
- ③ 유해, 위험문구 : 해당없음
- ④ 예방조치문구 : 해당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 NO	함유량(%)	비고
Water	물	7732-18-5	81 ~ 90%	
뷰틸 메타크릴산-2-에틸헥실 아크릴산-스타이렌 중합체		26655-10-7	1 ~ 1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① 화학물질이 잔류하지 않을때 까지 충분히 씻을 것.
- ②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최소한 15분이상 씻은후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①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기며 연성세제 또는 다량의 물로 씻을 것.
- ② 용제나 신나를 사용하지 말 것.

다. 흡입 했을 때 :

- ①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한다.
- ② 호흡이 멎었거나 불규칙하면 인공호흡을 시킨다.
- ③ 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

라. 먹었을 때 :

- ①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
- ②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 ③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정 일자	1997-11-01
MSDS - 3050157		개정 일자	2013-06-12
Page 2 / 4		개정 횟수	1

4. 응급조치 요령

- 바. 의사의 주의사항 :
- ① 호흡을 위한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고 필요시 위세척을 고려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가. 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연소 및 가열시 탄소산화물 발생
 라.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① 호흡기보호 :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② 눈보호 : 보호용 안경을 착용할 것
 - ③ 손보호 : 보호장갑 또는 PVC장갑을 착용할 것
 - ④ 신체보호 : 불침투성 보호의와 작업화, 장갑등의 장비를 착용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호흡기구 및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 금지할 것, 유출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오염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오염물질이 타 지역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을 것. 토양 또는 수중 유출을 막을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모래, 보루, 기름처리제 등의 흡수제로 닦아내고 관련법규에 의거한 폐기용 용기에 담아 폐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보호장비착용 화원, 열 발생 및 스파크 주의. 큰 충격과 압력주의.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피해야 할 조건 : 혼합금지 물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노출기준

구성성분	CAS NO	국내노출기준	ACGIH노출기준
Water	7732-18-5	자료없음	자료없음
뷰틸 메타크릴산-2-에틸헥실 아크릴산-스타이렌 중합체	26655-10-7	자료없음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사업주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중에 이들 함유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화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개인보호구
- ① 호흡기 보호: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진마스크 또는 유기용제용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것.
 - ② 눈보호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 ③ 신체보호: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④ 신체보호: 적합한 보호의를 착용할 것.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MSDS - 3050157 Page 3 / 4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정 일자	1997-11-01
		개정 일자	2013-06-12
		개정 횟수	1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유색 불투명 액체	나. 증기압 : 자료없음
다. 냄새 : 약한 모노머 냄새	라. 용해도 : 수용성
마. 냄새역치 :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바. pH : 자료없음	하. 비중 : 1.01
사. 녹는점/어는점 :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 자료없음
아. 끓는점/끓는점 범위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없음
자. 인화점 : 해당없음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차. 증발속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48KU
카. 인화성(고체,가스)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자료없음
타.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종합되지 않음.
 다.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충격에 의한 파손에 주의할 것,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십시오.
 라.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탄소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화학물질명	LD50.경구	LD50.경피	LD50.흡입(가스)	LD50.흡입(증기)	LD50.흡입(분진)
Water	LD50 90000 mg/kg Rat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부틸 메타크릴산-2-에틸헥실 아크릴산-스타이렌 중합체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육생, 생태 독성

화학물질명	어류	어패류	조류
Water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부틸 메타크릴산-2-에틸헥실 아크릴산-스타이렌 중합체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나.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다.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정 일자	1997-11-01
MSDS - 3050157		개정 일자	2013-06-12
Page 4 / 4		개정 횟수	1

13. 폐기시 주의사항

환경에 유입되지 않게 하며,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 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유기용제 등 활용 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 ① 유엔번호 : 해당안됨
- ② 품 명 : 수성바인더 200
- ③ 정 표 찰 : 해당안됨
- ④ 용기등급 : 해당안됨

나. 운송시 주의사항 : 충격에 주의하고 상온에서 운송할 것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① 유엔번호 : 해당안됨
- ② 유엔적정 선정명 : 해당안됨
- ③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안됨
- ④ 용기등급 : 해당안됨

라. 해양오염물질: 비대상

마.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시비상조치: F-E
- 유출시비상조치: S-E

15. 법적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비위험물 비위험물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페페인트와 페레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본 MSDS는 KOSHA, IUCLID, ESIS, CEFIC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 작성일자 : 제정일자 참고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1 회 2013/06/12

라. 기타